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
# 목차

목차	2
입법예고 - 전체	3
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
첨부파일(1)	3

##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-235호      작성일 2024.02.20      등록부서 최보길/0614303256산림과      고시공고구분  
공고(입법예고)

첨부파일(1)  4(입법예고)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.

###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조례명: 「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2. 제정이유

? 감사원 「공공업무추진운영실태」 감사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객실 부당 사용 및 예약방지를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개정 권고  
? 임과 함께 살기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? 주작산 자연휴양림 휴관일 지정(월요일)  
? 시설사용료 추가[크리스탈실, 사파이어실, 편백실(1호~7호)]  
? 예비 객실 운영 사항 홈페이지 상시 게시  
? 임과 함께 살기에 관한 지원 사항

4. 조례 개정안: 붙임 참조

5. 입법예고기간: 2024. 2. 20. ~ 3. 11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. 3. 11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강진군 산림과

- 1) 우편번호 59228 /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
- 2) 전화: 061) 430-3256 / FAX: 061) 430-3289
- 3) 강진군홈페이지: <http://www.gangjin.go.kr>

※ 의견 제출방법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목록

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